# 14.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: 2018년 4월 6일

O 발 의 자 : 강신혁 의원, 배재훈 의원

O 회부일자 : 2018년 4월 10일

O 상정일자 : 제25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위원회(2018년 4월 19일),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강신혁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O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교육행정협의회 활성 화를 위해 위원 구성 및 정기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- O 대구광역시교육청 위원을 국(과)장급 공무원 3명으로 조정(안 제3조)
- O 대구광역시 위원을 국(과)장급 공무원 3명으로 조정(안 제3조)
- O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추천 시,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을 대구광역시의회로 조정(안 제3조)
-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를 매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(안 제7조)

# 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행정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, 정기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

## O 주요 내용

- 안 제3조에서,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수를 대구광역시교육청 3명, 대구광역시 3명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. 협의회 위원 중 시의회 위원 추천을 시의회 의장 개인이 아닌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함
- 안 제7조에서, 교육감은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 30일 전까지 교육행정협의회 개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, 하반기에 필수 개최사유가 발생하므로 정기회 개최시기를 하반기로 변경함

## O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,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교육감과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수를 각 3명으로 동일하게 구성하고 정기회 개최 시기를 하반기로 변경하여,
-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청 간 교육·학예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교류 및 소통의 균형성을 기하고,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
- 아울러, 두 기관이 '지역'과 '교육'을 매개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연계·협력을 강화하여, 미래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
  - O 없 음
- 5. 토론요지
  - O 없 음
- 6. 수정안요지
  - O 없 음
- 7. 심사결과
  - O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- 8. 소수의견요지
  - O 없 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
  - O 없 음